

전주양현초등학교 출결관리 규정

[시행 2025.3.5.] [2025.3.5. 부분 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양현초등학교(이하 “양현초”라 한다) 출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양현초 학생의 출석상황 및 체험학습 사유가 발생될 경우 적용한다.

제3조(출결상황관리)

가. 결석

1) 결석일수의 산정

: 학칙에 따라,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.

(담임교사에게 사전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)

2)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며 **나이스학부모서비스를 통해 결석신고서(인정결석)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.**

가)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
나) **법정 감염병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확진 받은 경우(확진일부터 출석인정)**

다)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‘학교·시도(교육청)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, 교환학습, 교외체험학습(제 4조(체험학습)을 참고),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’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
라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 이수 기간

마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,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

바)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
【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】

구분	대상	일수	비고
결혼	• 형제, 자매, 부, 모	1	※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.
입양	• 학생 본인	20	
사망	•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	5	
	• 부모의 조부모, 부모의 외조부모 •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3	
	• 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1	

사)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

아)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,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

자)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시 지각·조퇴·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산정하고, 출결 산정 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.

- 3)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**나이스학부모서비스를 통해 결석신고서(질병결석)** + 증빙서류를 제출한다.
- 가) 상습적이지 않은 1~2일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: **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** ① 결석신고서 제출
- 나)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: **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** ① 결석신고서 +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, 입퇴원확인서)를 첨부 제출
- 다)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·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
- 라)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(천식, 아토피, 알레르기, 호흡기질환, 심혈관질환 등)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**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**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- 마)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**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**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- 바)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**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**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 ※ 라)~바)의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
- 4) 미인정 결석 (**결석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**)
- 가)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
- 나)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
- 다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
- 라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
- 마) 태만, 가출,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
- 바)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※ **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및 허위 결석**
- 5) 기타 결석은 **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하며, 나이스학부모서비스를 통해 결석신고서(기타결석) + 증빙서류를 제출한다.**
- 가) 부모·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**학교장이 인정**하는 경우
- 나)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**학교장이 인정**하는 경우

나. 지각·조퇴·결과

- 1) 지각: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
- 2) 조퇴: 등교시간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
- 3) 결과: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- 4) 위의 가. 2)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·조퇴·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- 5) 지각·조퇴·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, 미인정, 기타로 처리한다.
- 6) 같은 날짜에 지각·조퇴·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.
- 7)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.
- 8)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·조퇴·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,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.
- 9) 연 10회 초과 반복적인 지각·조퇴·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한다.

다. **출결처리**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결을 처리한다.

- 1) 장기결석은 공휴일을 제외한 **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5일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**로, 장기결석 사유를 입력한다. 단, 병결의 경우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, 신체적인 질병에 한하여 진료과목과 대략적 치료 상황을 기재한다.(동일한 질병명에 대해 담임 간 기재 차이 여부 확인)
- 2) 단기결석인 경우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으나 **횟수가 5일 초과인 경우**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한다.

라. 학년 수료

- 1)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- 2)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로 학적 관리한다.
- 3) 위 2)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한다.

제4조(체험학습)

가.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

- 1) 개인 교환학습: 1개월(4주) 이내
- 2) 단체 교환학습: 2주일 이내(단, 해외 교환학습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)
- 3) 교외체험학습: **나이스학부모서비스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신청,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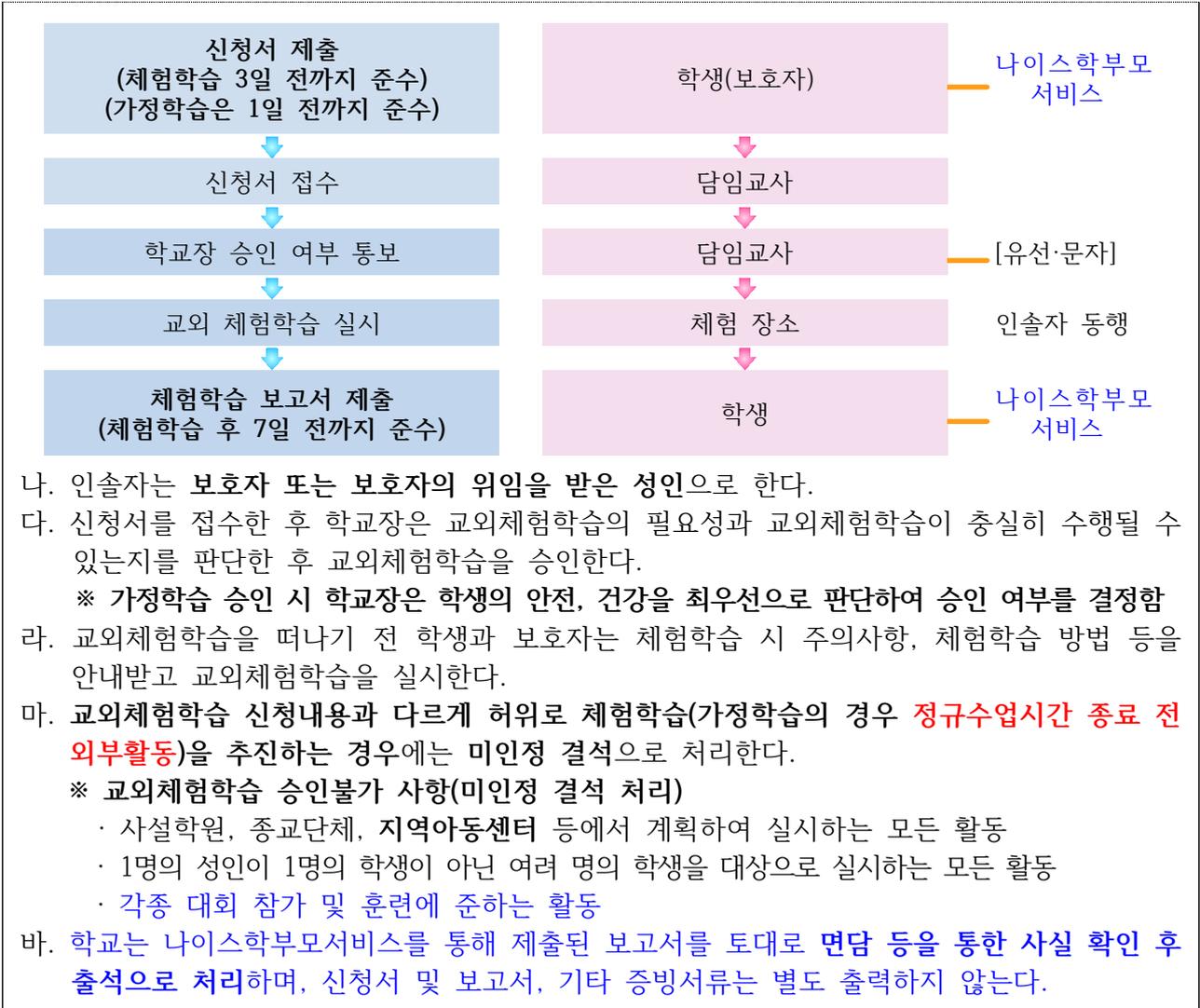
◇ 운영

- 가.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,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, 그 기간은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**연 15일 이내**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.
- 나. 교외체험학습은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 견학, 답사,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,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활동을 의미하며, **감염병 위기 경보 ‘심각’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‘가정학습’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.**
- 다.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, 필요시 반일(4시간)도 운영이 가능하다. (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)
- 라.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**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**한다. 단,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(Unaccompanied Minor)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

◇ 신청 절차

- 가. 보호자는 체험학습 **실시 3일 전**(토·일 및 공휴일 제외, **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**)까지 교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, **나이스학부모서비스를 통해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을 신청**하고, **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[담임교사에게 유선 또는 문자]**로 통보 받은 후 실시하며, 학생은 체험학습 **종료 후 7일 이내까지 나이스학부모서비스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**한다.

※ 불가피한 사유(천재지변 및 통신 장애 등)로 인하여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가능



제5조(규정의) 이 규정의 사항은 ‘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’ 및 ‘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’에 따르며, 감염병(코로나19) 관련 출결·평가·기록사항은 학교보건법,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,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6조(출석상황처리) 이 규정의 사항은 ‘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’ 및 ‘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’에 따른다. 감염병(코로나19) 관련 출결·평가·기록사항은 학교보건법,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,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코로나19 관련 출결 관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,평가,기록 가이드라인 폐지(2024.5.1.)에 따라 변경사항<별지1>을 따른다.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해당 지침에 따른다.

부칙 <2019.3.19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5.8.>

이 규정은 202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5.3.5.>

이 규정은 202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